

검 토 보 고 서

안 건 명	부서명	페이지
1. 서울특별시마포구세계화추진협의회구성및 운영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	총무과	1
2.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		3

(2012. 10. 18)

마포구의회 행정건설위원회

[전문위원 명 금 길]

1. 안 건 명

가.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2. 제출일자 및 제출자

가. 제출일자 : 2012년 10월 9일

나. 제 출 자 : 마포구청장

3. 의안 회부일자

가. 2012년 10월 15일

나. 의안번호 : 12-85

4. 관련근거

가. 「지방자치법」제112조 (행정기구와 공무원)

나. 「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기준」제13조
(시·군·구의 기구 설치 기준)

[검토보고]

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동 조례안은 문화와 관광을 조화롭게 발전시키고 주민 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활성화 및 친환경 녹색도시 조성 등 변화된 행정환경에 맞게 일부 행정기구를 개편하여 규정 목표인 「더불어 잘 사는 복지 마포」 실현을 위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제출된 것임.

< 주요내용 >

- (1) 안 제4조제1항에서는 생활안전과를 폐지하고 안전도시와 재난관리를 통합하여 총무과로 이관하였으며, 문화와 관광의 조화로운 발전과 종교계의 풍부한 지역자원 협력을 위해 문화체육과를 문화관광과로 개편하고, 생활체육 진흥 및 활성화를 위해 생활체육과를 신설함.
- (2) 안 제7조제1항 친환경 녹색도시 건설을 위해 환경과를 도시관리국으로 이관하고 국 명칭을 도시환경국으로 변경함.
- (3) 안 제8조제1항 지적과를 도시관리국에서 건설교통국으로 이관하여 국별로 6개과를 둬으로써 인력의 효율적 활용 및 국장의 부서 관리범위를 조정함.

< 검토의견 >

동 조례안은 상위 근거법령인 「지방자치법」 제112조 및 「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제13조에 따라 더불어 잘사는 복지

마포건설에 중점을 두고 구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체육활성화와 친 환경 녹색도시 조성 등 변화된 행정환경에 맞게 일부 행정기구를 개편 하였으나 행정의 연속성, 안정성, 신뢰성의 견지에서 부득이 한 경우를 제외 하고는 가급적 신중하게 변경을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입법예고 등 우리 구 조례·규칙심의회 의결을 거친 사항으로 특이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.

다만, 재개편의 후속조치로는 사무실 및 인력 재배치, 관련 서류 및 장부의 정비 등 이에 따른 각종 홍보매체를 통한 적극적인 사전 홍보활동 등을 전개하여 행정기구 개편으로 인한 민원불편을 최소화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.